

#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8. 10. 14

다. 상 정 일 자 :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8. 10. 19) 상정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 규 린)

#### 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어금
<b>합 계</b>	1,136,512,144	1,154,971,040	937,294,234	217,676,806
<b>일 반 회 계</b>	873,264,379	879,632,924	799,545,949	80,086,975
<b>특 별 회 계</b>	263,247,765	275,338,116	137,748,285	137,589,831
공 영 개 발 사 업	80,589,143	80,029,835	20,391,941	59,637,894
지 역 개 발 기 금	129,941,392	142,514,544	81,990,919	60,523,625
의 료 보 호 기 금	25,111,261	25,128,209	24,925,396	202,813
농 어 촌 소 득 개 발 기 금	7,828,876	7,868,902	7,828,000	40,902
대 청 호 대 책	2,097,093	2,097,100	2,097,093	7
증 평 공 업 단 지 조 성	17,680,000	17,699,526	514,936	17,184,590

○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위와 같음.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36,512,144	1,176,953,557	1,154,971,040	1,200,648	20,781,869
일반회계	873,264,379	898,486,793	879,632,924	1,200,648	17,653,221
특별회계	263,247,765	278,466,764	275,338,116	0	3,128,648
- 공기업	210,530,535	225,673,027	222,544,379	0	3,128,648
· 공영개발사업	80,589,143	83,158,483	80,029,835	0	3,128,648
· 지역개발기금	129,941,392	142,514,544	142,514,544	0	0
- 의료보호기금	25,111,261	25,128,209	25,128,209	0	0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7,828,876	7,868,902	7,868,902	0	0
- 대청호 대책	2,097,093	2,097,100	2,097,100	0	0
- 중평공업단지조성	17,680,000	17,699,526	17,699,526	0	0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 1,365억 1,214만 4천원 대비 103.6%인 1조 1,769억 5,355만 7천원이 정수결정되었음.
- 미수납액 176억 5,322만 1천원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864만 8천원이며,
- 불납결손액 12억 64만 8천원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음.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136,512,144	981,371,385	937,294,234	92,704,593	106,513,317
일반회계	873,264,379	843,480,282	799,545,949	58,393,789	14,324,641
특별회계	263,247,765	137,891,103	137,748,285	33,310,804	92,188,676
- 공기업	210,530,535	102,502,921	102,382,860	16,145,740	92,001,935
· 공영개발사업	80,589,143	20,512,002	20,391,941	16,145,740	44,051,462
· 지역개발기금	129,941,392	81,990,919	81,990,919	0	47,950,473
- 의료보호기금	25,111,261	24,925,396	24,925,396	0	185,865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7,828,876	7,828,000	7,828,000	0	876
- 대청호대책	2,097,093	2,097,093	2,097,093	0	0
- 중평공업단지조성	17,680,000	537,693	514,936	17,165,064	0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1,365억 1,214만 4천원 대비 평균 82.5%인 9,372억 9,423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91.6%,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52.3%임.
- 예산현액이 전년도 ('96) 보다 전체 1,335억 5,373만 4천원 (일반회계 1,327억 4,264만 7천원, 특별회계 8억 1,108만 7천원 증)이 증가 하였고, 집행율은 3.1%(일반회계 1.4% 증, 특별회계 20.3% 감)가 감소되었으며,

### 3. 계속비 · 명시이월비 · 사고이월비 결산

#### (1)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청주국제공항개항 기념 조형물 건립”사업의 57건에 593억 9,379만원으로

- 계속비 : “도립옥천전문대학건립” 사업비 40억 9,471만 4천원
- 명시이월비 : “청주국제공항개항기념조형물건립”사업의 14개 사업에 113억 6,474만 3천원
- 사고이월비 : “국가지원 지방도확 · 포장사업등 41건의 사업비 439억 3,433만 3천원임.

####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4건 333억 1,080만 3천원으로서,

- 계속비 : 2건에 329억 3,382만 5천원
- 명시이월비 : 1건에 2억 5,691만 8천원
- 사고이월비 : 1건에 1억 2,006만원임.

#### 4. 채권·채무결산

##### (1) 채권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97년 발생	'97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85,097,216	129,680,103	104,571,717	310,205,602
일반회계	31,464,803	15,495,084	10,781,820	36,178,067
특별회계	253,632,413	114,185,019	93,789,897	274,027,535

##### (2) 채무증감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96말 잔액	'97년 발생액	소계	'97 상환액	'97말 잔액
합 계	287,865,033	70,185,392	358,050,425	47,779,689	310,270,736
지방채	286,174,527	69,007,309	355,181,836	46,023,454	309,158,382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해외차관	1,690,506	1,178,083	2,868,589	1,756,235	1,112,354

## 5. 재산결산

### (1)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용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97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364,968,594	42,067,914	32,615,089	374,421,419
행정	재산	306,631,744	28,629,138	16,708,988	318,551,894
공용	재산	232,820,662	25,160,208	16,093,664	241,887,206
공공	재산	50,671,805	3,466,946	84,548	54,054,203
기업	용재산	23,139,277	1,984	530,776	22,610,485
보존	재산	21,865	0	0	21,865
잡종	재산	58,314,985	13,438,776	15,906,101	55,847,660

### (2) 물품조사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정수	전년도말 보유현액	당해연도 증감실정		
			취득	처분	보유현황
수량(점)	4,745	3,053	833	119	3,767
가액(천원)		27,772,645	3,388,149	797,085	30,363,709

-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서, 동법 제104조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작성등)에 따라 199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보고한 내용임.

## 6. 기금결산

### ○ 적립기금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적립액			'97년도 사용액	'97년도말 현재액	근거
	'96년까지	'97년도분	계			
계	38,869,962	42,293,932	81,163,894	34,158,737	47,005,157	
문화예술 진흥기금	5,341,000	626,732	5,967,732	419,481	5,548,251	도문예진흥기금조성설치 운영조례
생활보호기금	82,672	4,609	87,281	0	87,281	생보법 제37조 및 도운영 관리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061,222	113,957	1,175,179	168,350	1,006,829	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재해구호기금	5,985,148	470,514	6,455,662	392,163	6,063,499	재해구호법제15조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127,011	25,651	152,662	0	152,662	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청소년장학기금	21,942	4,204	26,146	4,000	22,146	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1지역1명품 육성기금	0	408,844	408,844	400,000	8,844	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조례
자동차운수 사업발전기금	3,128,301	366,746	3,495,046	557,046	2,938,000	도자동차운수사업법과정금 징수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19,074,228	36,609,496	55,683,724	30,105,558	25,578,166	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
노인복지기금	471,937	274,342	746,279	10,000	736,279	노인복지법 제4조
식품진흥기금	3,408,390	2,116,184	5,524,574	2,010,189	3,514,385	식품위생법 제71조
재해대책기금	0	1,240,501	1,240,501	79,000	1,161,501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증평출장소)	(168,112)	(32,153)	(200,264)	(12,950)	(187,314)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38,135	12,397	150,532	12,950	137,582	본청분과동일
청소년자립 지원자금	29,976	19,756	49,732	0	49,732	본청분과 동일

상기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나, 각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된 관리규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잔액 증명과 상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음.

## 7. 금고결산

### ○ 잉여금처분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잉여금처분내역		
					이월사업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154,971,040	937,294,234	217,676,806	92,704,593	671,226	124,300,987
일반회계		879,632,924	799,545,949	80,086,975	59,393,790	669,578	20,023,607
특별회계	소계	275,338,116	137,748,285	137,589,831	33,310,803	1,648	104,277,380
	의료보호기금	25,128,209	24,925,396	202,813	0	1,648	201,165
	농어촌소득개발	7,868,902	7,828,000	40,902	0	0	40,902
	대청호특별대책	2,097,100	2,097,093	7	0	0	7
	중형공업단지조성	17,699,526	514,936	17,184,590	17,165,064	0	19,526
	공영개발	80,029,835	20,391,941	59,637,894	16,145,739	0	43,492,155
	지역개발기금	142,514,544	81,990,919	60,523,625	0	0	60,523,625

#### ○ 일반회계

- 총수입액이 8,817억 1,422만 6천원이었으나 과오납금 20억 8,130만 2천원을 반환하고 실수납액은 8,796억 3,292만 4천원이었고,
- 총지출액은 8,005억 2,337만 5천원이었으나 지출금액중 9억 7,742만 6천원을 반납받음으로써 실지급액은 7,995억 4,594만 9천원으로 800억 8,697만 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의 5개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2,753억 3,811만 6천원이었고, 총세출결산액은 1,377억 4,828만 5천원으로 1,375억 8,983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8. 검토보고요지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김 영 만)

'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보고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몇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 세 입 부 분

#### <일반회계>

예산현액 8,732억 6,437만 9천원의 100.7%인 8,796억 3,292만 4천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4,877억 5,970만 6천원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할 수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서 22.5%를 초과징수하였는바, 이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32억 4,776만 5천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753억 3,811만 6천원으로 10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 몇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면,

### **첫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미비**

지방세 목표액 1,603억 3,200만원 대비 1,963억 7,968만원을 수납하여 360억 4,768만원을 초과징수한 것은 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 노력때문이기도 하나,

지방세 체납액 사유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체납액 164억 2,700만원중 납세태만과, 재산압류사유가 105억 7,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4%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부과처분 지연 등 체납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납세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전개와 재산조사,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채무부담액 파악 등 체납액 정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세입과목 분류 부적정**

예산편성시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민간융자회수이자 1억 3,700만원을 민간융자금회수로 세입과목을 부적정하게 분류하는 오류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입과목을 정확히 분류하여 세입금관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하겠음.

## 세출부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732억 6,437만 9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96년도 90.2%보다 1.4% 높은 91.6%가 되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합 사업의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등 긴축재정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632억 4,776만 5천원중 1,377억 4,828만 5천원이 지출되어 52.3%가 집행되었으나,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은 예산액 176억 8,000만원중 5억 1,493만 6천원만 지출하고 잔액은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몇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 **첫째, 충청북도청소년자원봉사 센터 운영 부적정**

충청북도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충청북도 예규 제410호의 규정에 따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에서 5,539만원의 세출예산을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하부조직이나 사업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조직된 기관으로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며 조직과 운영을 내규적 규정인 예규로 시행함은 부적절하고 소속직원의 신분상 지위와 재산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그 책임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적법한 규정도 제정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운영케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시설공사설계소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현지의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정확한 설계를 함으로써 시공중에 입지적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억제하여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 예산운영면에서 원할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시공 도중 당초 계약 금액의 30%이상이 넘는 계약변동을 하므로써 설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출면에 있어서도 18억 967만 1천원을 추가부담하게 하였으며,

특히, 내둔 ~내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당초계약금액 3억 4,100만원에 105.3%인 3억 5,900만원을 추가하는 계약변경을하여 낮은 계약금액으로 출발 업체 선정된 후 현실적 공사금액에 맞춰주는 듯한 인상을 받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겠음.

### **셋째, 세출예산전용 부적정**

세출예산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되어야 하고 시설비의 경우 시설비에 수반되는 설계비와 부대경비 외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주민숙원 사업비와 보조금 등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농촌출신학생기숙사 건립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600만원, 중평출장소관내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1억 5,000만원과 도당 노인회관 건립비로 전용하여 집행케 하였고, 하수도정비사업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전용했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에서 4,973만 4천원을 타과목에 전용(감)하고도 집행잔액이 1억 55만 3천원 발생하였고, 일반수용비 등으로 1,500만원을 전용(증)받고도 2,75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전용하므로써 예산전용 목적을 소홀히 하였음.

앞으로 시설비나 보조금 등 주민숙원사업 등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적법하게 운용할 것이며, 특히 전용과목별 예산현액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용해야겠음.

### **넷째, 세출예산운영 부적정**

세출예산집행도중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예견되면 그 소요판단을 정확히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세출예산경정 조치를 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업예산 중 10% 이상 집행잔액이 18건에 53억 7,838만 9천원,

일반행정 예산이 22건에 4억 6,204만 7천원, 경상적 경비가 26건에 7억 7,763만 2천원이 발생하는 등 합계 66건에 66억 1,806만 8천원의 세출예산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앞으로 세출예산잔액(불용액)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세출예산운영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재원부족으로 시행치 못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해야 할 것임.

참고로 향후 '98년 2차 추경에 입찰잔액등 집행잔액을 적극 찾아내 수해대책비로 활용한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임.

### **다섯째, 기금관리방법 통일**

결산보고서의 기금운용계획상 예산액이 비교 표시되지 않았으며 기금대차 대조표의 작성시 출연금과 이익적립금 및 당기순이익의 구분표시가 미흡하게 표시되었고, 각종 기금의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의 내용이 각각 달라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며, 기금의 예치기관도 각각 달리 규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금의 경우 운용관과 출납담당관을 도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규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 예산대비 표시를 하기 바라며, 각종기금의 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례의 내용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기금의 관리방법 및 기금예치기관을 도금고로 일원화 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금, 청소년 장학기금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금들은 관련내용을 통일시켜서 기금관리와 결산 보고서의 일관성 유지 및 결산의 적정을 기해야하겠음.

## 여섯째,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의 부적정

예측불허의 긴급재해 우려가 잠재하고 있는 각읍면 단위 주요하천에 대한 하상정리 및 잡초와 수목제거는 우기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수해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대폭감액으로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96년도 예산액 22억 6,000만원에 비해 '97년도 19억 7,000만원이 감소한 2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하므로써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이는 '98 금년 수해 등을 비교할 때에 앞으로도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재해관련예산은 당초 예산에 과감하게 계상하여 각읍면 단위하상을 말끔히 정리하므로서 농업용수 공급, 상수원보호, 환경정화를 기본으로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예비비에 의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함.

## 일곱째, 중평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소홀

중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96. 12월부터 시행 '99.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97년도 사업비로 10억 6,097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24억 187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수해자가 설치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부담토록 되어있음에도 동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앞으로는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음.

### **여덟째, 중평공업단지조성사업의 부적정**

중평공업단지조성사업은 '96~'99년까지 단지조성 추진중이나 입주신청업체가 없어 선수금도 받지 못하여 토지 보상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개인의 재산권만을 규제하였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상환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대기업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조기에 입주토록 유치작전을 활발히 하므로써 토지소유자의 불만 해소는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해야겠음.



## 9. 주요지적사항

- 없음.

## 10.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가결

## 11. 소수의견요지

- 없음.

##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 : 1.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부.  
2. 충청북도 세입결산 승인(안) 1부.  
3. 충청북도 세출결산승인(안) 1부. 끝.